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3.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1월 22일, 정부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2.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6.)

상정 · 심사 · 원안의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 3. 11.)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외교부장관 조태열)

가. 제안이유

이 의정서의 체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OECD 및 G20이 주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참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납세자가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볼 때 상호 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함(안 제2조).
- (2)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

- (3) 이 협정의 혜택을 얻는 것이 주요 목적인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1)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2)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 (3) 체결경위
- 2018. 1. 문안 교섭 개시
 - 2024. 4. 최종 문안 합의
 - 2024. 11. 26. 제50회 국무회의 심의
 - 2024. 12. 3. 서명(서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 검토의견

I. 개요

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라 함)은 두 나라 간에 체결되는 조약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가 동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임.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와 거주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국제 거래와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중과세 방지협정임.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①협정에 따라 특정 소득의 과세 권한을 한쪽 국가에 우선 부여하는 과세권 배분, ②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거주국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또는 면제하는 방식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③두 국가 간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상호 협력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④탈세 방지를 위해 국가 간 금융 및 세무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 교환 조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한-키르기즈공화국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배경과 개요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단순히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해외 투자 활성화, 국제 무역 및 교류 촉진,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해 국가 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¹⁾해 왔음.

한편, 2008년(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원외교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²⁾과 같은 자원보유국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였음.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³⁾(이하 ‘협정’이라 함)이 체결되었음.

동 협정은 전문, 본문 31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

1) 우리나라는 9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2024.12. 기준)하였고, 이 가운데 96개국에서 협약이 발효 중임. [참고 1] 참조(p.11.)

2)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금, 주석, 우라늄 등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즈공화국의 총리(2007.11.), 제1부총리(2008.4.)가 잇달아 방한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기업도 발전, 건설, 금융 등의 분야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어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조세조약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였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한-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협상 개최’, 2008.5.20.)

3) 조약 제2165호, 2013. 11.22. 발효(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중 대상조세, 배당, 이자 등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의 과세대상을 축소·변경하거나 일부 세율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4)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바⁵⁾ 있음.

다. 한-키르기즈공화국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경위

동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OECD 및 G20이 주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⁶⁾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이하 ‘BEPS 방지 프로젝트⁷⁾’) 이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임.

2018년 1월 우리 정부 측의 개정 제안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서면 협상이 진행⁸⁾되었고, 2024년 4월 최종 문안에 양국이 합의한 후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음.

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 국회회의록 참고(2013.6.25. 제316회국회 제8차 본회의)

6)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의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뜻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는 국가(조세피난처)에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7)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이 주도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로서, 기업들이 불법적인 조세 회피 전략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공통된 세법과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8) 서면 협상의 특성상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OECD 최신 기준(조세 혜택을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인위적인 거래, 일명 ‘조약 쇼핑(Treaty Shopping)’ 방지 강화 및 정보 교환 협력 강화 등)을 충족하기 위한 동 개정예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도출(외교부 설명)

II. 국회 비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 협정의 개정 내용이 입법 사항⁹⁾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가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됨.

동 협정의 제29조를 개정¹⁰⁾하는 의정서안은 혜택에 대한 자격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의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요목적기준 (Principal Purpose Test, 이하 ‘PPT’라 함)’¹¹⁾을 채택하고 있음. 이는 납세자가 거래 등을 수행하는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특정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일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PPT 규정은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와 같은 개정 취지는 「BEPS 방지 다자협약」¹²⁾ 제7조(조약 남용 방지)¹³⁾의 규정 취지와 일치함.

9) 국회의 입법 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국내법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거나, 과세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음.

10)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을 삭제하고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으로 대체

11)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라고도 함)의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거래나 구조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임. 이는 OECD 및 G20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 회피 및 소득 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특히, 제한세율 적용 또는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악용한 탈세 또는 조세의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임.

12)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7일 파리 OECD에서 서명된 협약

13) 제7조(조약 남용 방지) 1. 대상조세협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협정에 따른 혜택은,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2항¹⁴⁾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¹⁵⁾을 규정하고, 특히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협정의 개정 조문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분	국제조세법 제3조제3항	동 협정 개정 조문
규정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③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적용 요건	①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②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 또는 여러 번 거래를 거친 경우	①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이 협정 혜택을 얻는 것 ② 혜택 부여가 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입증되지 않을 것
효과	실질에 따라 세금 부과(실질과세)	협정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대상조세협정의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해서도 부여되지 않는다.(국제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조세조약 > BEPS다자협약)

14) 「국제조세법」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15) 명목상으로 보이는 거래 형태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임.

이처럼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두 규정의 취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국제조세법은 ①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②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를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협정의 제29조 개정안은 ①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이 협정의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그 혜택의 부여가 이 협약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함.

아울러 양자의 효과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국제조세법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비해 개정안의 경우 기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과 PPT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정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국내법인 국제조세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이 동 협정의 개정 내용은 국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과 그 요건 및 효과에서 차이가 있는 PPT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한 조약으로 볼 수 있음.

Ⅲ.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협정 개정을 규정한 제30조(발효)제3항¹⁶⁾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협정 전문, 상호 합의 절차, 정보교환 및 혜택 자격에 관한 사항임.

가. 협정 전문(동의안 제1조)

기존 협정 조문	협정 개정 조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u>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u>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 며, 그리고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 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의안 제1조는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의 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기존 전문에서 더 나아가, 조세 협력 강화 및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담아, 조세 감면이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조세 조약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음.

16) 양 체결국은 상호 합의를 통하여 그 규정이 이 협정의 필수적인 일부를 이루는 별도의 의정서로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

동 규정을 통해 양국은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조세 규범에 맞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상호 합의 절차(동의안 제2조)

기존 협정 조문	협정 개정 조문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u>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또는 그 사안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u>첫 문장을 삭제</u>하고 <u>다음으로 대체</u>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u>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u>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의안 제2조는 과세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기존에는 거주지국 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하여 양 체약국 중 어느 한쪽에도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동 규정을 통해 납세자는 조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조세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등 절차 개선과 함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교환(동의안 제3조)

동의안 제3조는 정보 요청을 받은 계약국은 조세 목적과 관계없이 정보 제공 의무를 가지며, 단순히 금융기관, 명의인, 대리인 등의 자격으로 보유한 정보이거나 특정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동 규정을 통해 양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이 강화되며, 정보 제공 거부 사유가 최소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라. 혜택에 대한 자격(동의안 제4조)

제29조 혜택의 제한 협정에서 다루는 <u>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u>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u>이 협정의 조들을 이용하는 것이었을 경우</u>,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탈세 또는 조세의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u>한쪽 계약국의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u>	협정 <u>제29조(혜택의 제한)</u>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u>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u>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u>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u>,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u>”
--	---

동의안 제4조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협정 혜택의 주요 목적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부여 원칙을 설정하

고 있음. 또한, 예외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혜택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납세자의 거래 목적이 비과세·저율과세 등의 혜택만을 누리기 위한 것일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부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IV. 종합의견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이 협정을 통한 부당한 혜택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 신청 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 건)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기존 협정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 절차의 신청국가를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고, 양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 보호 및 납세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
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
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
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를 정부가 비준하도록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동의한다.

붙임 :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
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
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내각은,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그리고

협정의 개정을 규정한 협정 제30조(발효)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정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탈세 또는 조세 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조세 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과세 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협정 제26조(상호 합의 절차)제1항의 첫 문장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어느 인이 한쪽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 결과가 자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인은 그러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구제 수단과 무관하게,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

협정 제27조(정보교환)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단지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명의인 또는 대리인·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느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

협정 제29조(혜택의 제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된 제29조(혜택에 대한 자격)로 대체한다.

“제29조

혜택에 대한 자격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떠한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혜택은 소득 또는 자본 항목에 대하여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양 계약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서면 통보 중 나중의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다음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해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다. 이 의정서 제2조에 대해서는, 사안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한쪽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되는 사안, 그리고

라. 이 의정서 제3조에 대해서는, 요청과 관련된 과세기간과 무관하게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요청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 계약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에서 한국어, 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내각을 대표하여

**2012-жылдын 11-декабрында Сеул шаарында кол коюлган Кош
салык салууну болтурбоо, киреше жана капитал салыктарын
төлөөдөн качууну алдын алуу жөнүндө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менен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нүн ортосундагы
макулдашууга өзгөртүүлөрдү киргизүү тууралуу протокол**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жана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инистрлер Кабинети,

2012-жылдын 11-декабрында Сеул шаарында кол коюлган Кош салык салууну болтурбоо, киреше жана капитал салыктарын төлөөдөн качууну алдын алуу жөнүндө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менен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нүн ортосундагы макулдашууга (мындан ары – Макулдашуу) өзгөртүүлөрдү киргизүү тууралуу протоколду түзүүнү каалап, жана

Макулдашууга өзгөртүүлөрдү киргизүүнү караган Макулдашуунун 30-беренесинин (Күчүнө кириши) 3-пунктун жетекчиликке алып,

төмөнкүлөр жөнүндө макулдашты:

1-берене

Макулдашуунун преамбуласы төмөнкүдөй редакцияда баяндалсын: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менен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экономикалык мамилелерин андан ары да өнүктүрүүнү жана салык маселелериндеги кызматташууну кеңейтүүнү каалап, жана

салык салбоо же салык төлөөдөн качуу жолу менен салык салууну азайтуу үчүн мүмкүнчүлүктөрдү түзбөстөн, анын ичинде үчүнчү мамлекеттердин резиденттеринин кыйыр пайдасы үчүн ушул Макулдашууда каралган жеңилдиктерди алууга багытталган келишимдик макулдашуулар аркылуу Кирешелерге жана капиталга салыктарга карата кош салык салууну четтетүү жөнүндө макулдашуу түзүүгө ниеттенип,

төмөнкүлөр жөнүндө макулдашты:”.

2-берене

Макулдашуунун 26-беренесинин (Өз ара макулдашуунун жол-жобосу) 1-пунктунун биринчи сүйлөмү төмөнкүдөй редакцияда баяндалсын:

“1. Эгерде жак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ердин биринин же экөөнүн тең аракеттери ушул Макулдашуунун жоболоруна ылайык келбеген бул жакка салык салууга алып келет деп эсептесе, бул жак ушул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ердин ички мыйзамдарында каралган укуктук коргонуу каражаттарына карабастан, ишти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ин кандай болбосун компетенттүү органына өткөрүп бере алат.”.

3-берене

Макулдашуунун 27-беренеси (Маалымат алмашуу) төмөнкүдөй мазмундагы 4 жана 5-пункттар менен толукталсын:

“4. Эгер маалымат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 тарабынан ушул беренеге ылайык суралып жатса, башка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 өзүнүн салыктык максаттары үчүн мындай маалыматка муктаж болбосо дагы, экинчи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 суралып жаткан маалыматты алуу үчүн маалымат чогултуу боюнча өзүнүн чараларын колдонууга тийиш. Мурунку сүйлөмдө камтылган милдеттенме 3-пункттун чектөөлөрүнө кирет, бирок мындай чектөөлөр эч качан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ке анын мындай маалыматка ички кызыкчылыгы жок болгондуктан гана маалымат берүүдөн баш тартууга мүмкүндүк берет деп чечмеленбеши керек.

5. Ушул берененин 3-пунктунун жоболору кандай болгон учурда да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ке маалымат банкта, башка финансылык мекемеде, дайындалган адамда же агенттикте же ишенимдүү жак катары аракеттенген адамда сакталгандыктан же ал кандайдыр бир жактын мүлктүк кызыкчылыктарына тиешелүү болгондуктан гана маалымат берүүдөн баш тартууга мүмкүндүк берет деп чечмеленбөөгө тийиш.”.

4-берене

Макулдашуунун 29-беренеси (Пайдадан чектөө) төмөнкүдөй редакцияда баяндалсын:

“29-берене

Жеңилдиктерге укук

Ушул Макулдашуунун башка жоболоруна карабастан, эгерде бул пайданы алуу кандай болбосун макулдашуунун же бүтүмдүн негизги максаттарынын бири болгон мындай пайданы алууга түз же кыйыр алып келген бардык тиешелүү фактыларды жана жагдайларды көңүлгө алып негиздүү түзүлсө, эгерде мындай жагдайларда мындай пайданы берүү ушул Макулдашуунун тиешелүү жоболорунун объектисине жана максаттарына ылайык келет деп белгиленбесе, ушул Макулдашуу боюнча пайда киреше же капитал беренесине карата берилбейт.”.

5-берене

1. Ушул Протокол анын күчүнө кириши үчүн зарыл болгон мамлекеттик ички жол-жоболор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ер тарабынан аякталгандыгы жөнүндө алардын жазуу жүзүндөгү акыркы билдирүүсү дипломатиялык каналдар аркылуу алынган күндөн тартып отузунчу (30) күнү күчүнө кирет.

2. Ушул Протоколдун жоболору төмөнкүлөргө карата күчүнө кирет:

- a) ушул Протокол күчүнө кирген жылдан кийинки календардык жылдын январынын биринчи күнүндө же ошол датасынан кийин төлөнүүгө тийиш болгон суммалар үчүн булактан кармалуучу салыктарга карата;
- b) башка салыктарга карата – ушул Протокол күчүнө кирген жылдан кийинки календардык жылдын биринчи январынан башталган салык жылдары үчүн;
- c) ушул Протоколдун 2-беренесине карата –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ин компетенттүү органына ушул Протокол күчүнө кирген датада же андан кийин берилген иш боюнча, иш тиешелүү болгон салык мезгилине карабастан; жана
- d) ушул Протоколдун 3-беренесине карата – суроо-талап тиешелүү болгон

салык мезгилине карабастан, ушул Протокол күчүнө кирген датадан кечиктирбестен жасалган суроо-талап үчүн.

Муну ырастап, Келишим түзүүчү Мамлекеттер тарабынан тийиштүү түрдө ыйгарым укук берилген төмөндө кол койгондор ушул Протоколго кол коюшту.

Сеул шаарында 2024-жылдын 3- декабрында эки нускада, ар бири корей, кыргыз, орус жана англис тилдеринде кол коюлду, бардык тексттер бирдей күчкө ээ. Чечмелөөдө кандайдыр бир келишпестиктер болгон учурда англис тилиндеги текст артыкчылыктуу күчкө ээ болот.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Өкмөтү
үчүн**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инистрлер Кабинети
үчүн**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збежании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в отношении налогов на доходы и
капитал, подписанное в городе Сеул
11 декабря 2012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желая заключить Протокол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избежании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в отношении налогов на доходы и капитал, подписанное в городе Сеул 11 декабря 2012 года (далее – Соглашение), и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пунктом 3 статьи 30 (Вступление в силу) Соглашения,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м внесение изменений в Соглашени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ледующем:

Статья 1

Преамбулу Соглашения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желая и дальше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налоговых вопросах, и

намереваясь заключить Соглашение об устранении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налогов на доходы и капитал без создания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не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или снижения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путем уклонения от уплаты налогов, в том числе посредством договорных соглаш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лучение льгот,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настоящим Соглашением для косвенной выгоды резидентов третьих государств,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ледующем:».

Статья 2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ункта 1 статьи 26 (Процедура взаимного согласования) Соглашения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1. Если лицо считает, что действия одного или обоих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Государств приводят или приведут к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ю этого лица 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ложениями настоя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данное лицо может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редств правовой защиты,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внутренн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этих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Государств, передать дело компетентному органу любого Договаривающегося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тья 3

Статью 27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Соглашения дополнить пунктами 4 и 5 следующего содержания:

«4. Если информация запрашивается Договаривающим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й, другое Договаривающееся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свои меры по сбору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запрош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аже если это другое Договаривающееся Государство может не нуждаться в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своих собственных налоговых целей. Обязательство, содержащееся в предыдущем предложении, подпадает под ограничения пункта 3, но та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должны быть истолкованы как позволяющие Договаривающемуся Государству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только потому, что у него нет внутреннего интереса в т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5.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положения пункта 3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и не должны толковаться, как позволяющие Договаривающемуся Государству отказывать 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информаци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информация хранится в банке, другом финансовом учреждении, у назначенного лица или лица, действующего в агентстве или в качестве доверенного лица, или потому что она относится к имущественным интересам какого-либо лица.».

Статья 4

Статью 29 (Ограничение в выгоде) Соглашения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Статья 29

Право на льготы

Несмотря на другие положения настоя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льгота по настоящему Соглашению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отношении статьи дохода или капитала, если разумно заключить,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вс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факты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что получение этой выгоды было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любого соглашения или сделки, которые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привели к получению такой выгоды, если не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акой выгоды в да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объекту и це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оложений настоящего Соглашения.».

Статья 5

1. Настоящий Протокол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на тридцатый (30) день со дня получения п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каналам последнего из письменных уведомлений Договаривающихся Государств о завершении ими внутри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цедур,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его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2. Положения настоящего Протокола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в отношении:

- а) налогов, удерживаемых у источника, для сумм, подлежащих уплате в первый день января или после этой даты календарного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в котором настоящий Протокол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 б) других налогов – для налоговых лет, начинающихся первого января календарного года, следующего за годом, в котором настоящий Протокол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или после него;
- с) статьи 2 настоящего Протокола – по делу, переданному компетентному органу Договаривающегося Государства в дату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астоящего Протокола или после не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логового периода, к которому относится дело; и

- d) статьи 3 настоящего Протокола – для запроса, сделанного не позднее даты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настоящего Протокол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логового периода, к которому относится запрос.

В удостоверение чего нижеподписавшиеся,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уполномоченные на это Договаривающимис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одписали настоящий Протокол.

Подписано в городе Сеул 3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в двух экземплярах, каждый на корейском, кыргызском, рус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все тексты имеют одинаковую силу. В случае каких-либо разногласий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текст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мее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ую силу.

**З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Кабинет Министров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1,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Desiring to conclude a Protocol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at Seoul on December 11, 201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and

Guided by paragraph 3 of Article 30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which provides for amendments to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preamble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Desiring to further develop their economic relationship and to enhance their cooperation in tax matters, and

Intending to conclude an Agreement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without creating opportunities for non-taxation or reduced taxation through tax evasion or avoidance, including through treaty-shopping arrangements aimed at obtaining reliefs provided in this Agreement for the indirect benefit of residents of third Stat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2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Article 26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at person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Contracting States, present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either Contracting State.”

ARTICLE 3

The following new paragraphs 4 and 5 shall be added to Article 27 (Exchange of Information) of the Agreement: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4

Article 29 (Limitation on Benefit) of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by the following new Article 29 (Entitlement to Benefits):

“ARTICLE 29
Entitlement to Benefits

Notwithstanding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granted in respect of an item of income or capital if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having regard to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obtaining that benefit was one of the principal purposes of any arrangement or transaction that result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at benefit, unless it is established that granting that benefit in these circumstanc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TICLE 5

1.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after the date of receip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the later of the written notifications by the Contracting States of their completion of domestic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shall have effect:
 - a) in respect of taxes withheld at source, for amounts payable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 b)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ble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 c) in respect of Article 2 of this Protocol, for a case presen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without regard to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case relates; and
 - d) in respect of Article 3 of this Protocol, for a request made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Protocol, without regard to the taxable period to which the request rel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 Contracting States, have signed this Protocol.

Done at Seoul, on the third day of December 2024, in two originals, each in the Korean, Kyrgyz,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KYRGYZ REPUBLIC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스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1	안 제3조 (정보 교환)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 (정보 교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 교환(안 제3조)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통상적이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상 비용만을 부담함.
 - 요청국은 경상비용 외 모든 비용인 특별비용을 부담하며, 요청국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사법·도산 절차 등 특정 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전문가·통역사·번역사와 관련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함.
- 비용추계는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요에 대한 사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보 교환 대상에 따라 요청국 및 피요청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계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III.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외무사무관	경제협정규범과장	국제경제국장
김보석	이송주	김지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보석 외무사무관	02-2100-7721	bskim22@mofa.go.kr

/끝/